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명

-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최근 도시미관 제고, 건축공사장 안전고나리 강화 등을 위해
건축계획, 굴토, 구조, 해체 등
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확대되면서 안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
- 그러나 구 건축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기준 인원수는
18명 내외로 시 건축위원회와 동일하나,
구성 가능한 전체 인원 수는 시 건축위원회의 40% 수준에 불과합니다.
- 다수의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의 전체 위원수가 충분치 않아
매 회의 개최를 위한 위원 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

- 이에 구 건축위원회 구성 최대 인원수를
현행 6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여
합리적이고 투명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